

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## 제 안 설 명

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김기대  
(더불어민주당, 도시계획관리위원회)

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과 선배.동료 위원 여러분!  
김기대 의원입니다.

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.

개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위 안은「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」상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는 횡단보도 쉼터를 도로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로 추가하여 횡단보도 쉼터의 설치 및 이용을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.

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